

## 보험 및 보상

대여료에 포함된 보상

고객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일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, 아래의 보상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합니다. 단,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손해,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, 당사의 렌탈 계약에 위반하는 사고,

경찰로부터 사고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,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.

\* 보험 증권의 면책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보상 유형		보상 금액
신체 상해 보상	최대 1인	무제한성
객관적 보상	1 사고 한도	무제한(50,000 엔부터 공제 가능, 차량에 따라 다름)
개인 상해 보상	최대 1인	무제한성
차량 보상	1 사고 한도	자동차 시장 가격(차량에 따라 다르며, 50,000 엔 공제액부터)

## 외보장(고객님 부담)에 대해서

사고 당시 경찰 또는 점포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(경찰의 사고 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) 또는 임대 계약을 위반한 경우.

운전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

계약기간의 무단 연장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

음주와 음주운전

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

계약서에 명시된 운전자 및 동승 운전자 이외의 주행을 하는 행위

대출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

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

당사의 허가 없이 결제한 경우

각종 테스트나 경기에 사용되거나 다른 차량을 견인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

고의적인 사고의 경우

귀하가 소유, 사용 또는 통제하는 재산에 대한 손상

펑크 또는 타이어 손상

도난으로 인한 차량 및 차량 장비(옵션 포함) 손상

휠 캡 분실 또는 손상

배터리 부족 등의 배터리 문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

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차체의 손상 또는 부식

타이어 체인, 캐리어 등으로 인한 긁힘

해안, 강바닥, 숲 등 이외의 도로에서 주행할 때 차량에 손상을 입힌 경우

디딤돌이나 날아다니는 물체로 인한 유리 손상

출발 시점에 식별할 수 없는 차량 손상

기타 임대차 계약서에 규정된 면책 조항에 해당하는 사고

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 또는 보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손해

그 외 보험증권의 면책 조항에 해당하는 사고

## 책임 면제 (렌탈 요금에 포함되지 않음)

출발 전에 공제 수수료(보험이 아님)를 지불하신 경우, 사고 발생 시 재산 공제액(50,000 엔부터)과 차량 공제액(50,000 엔부터)을 부담해 드립니다.

구독료 (24 시간당) **1,500 엔** (세금 별도)부터

\* 금액은 차량에 따라 다릅니다. **한 달에 최대 15 일**

\* 출발 후에는 가입 및 취소가 불가능합니다. 연장의 경우 자동으로 갱신됩니다.

\* 보험 증권의 면책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※21 세 미만의 고객 및 라이선스를 취득한 지 1년 미만인 분은 참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\* 과거에 사고 이력이 있고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,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※면제 보상 제도에 가입하고 있어도, 이하의 사업 보상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

합니다.

\* 100% 계약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## 사고, 고장,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, 영업보상금 (NOC: Non-Operation Charge)

계약에 따라 차량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, 손상 범위 또는 수리 기간에 관계없이 고객이 책임을 집니다.

(사고, 차량 내외의 파손, 도난, 변조, 금연차 내 흡연, 동물과 동승 등)

자급으로 예정 영업소에 반납하는 경우 : 20,000 엔

자주급으로 예정 영업소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: 50,000 엔(견인 요금 별도)

\* 사고가 발생한 경우, 그 시점에서 렌탈 계약이 종료됩니다. 또한 이미 수령한 렌탈 요금의 환불은 하지 않습니다.

※면세 보상 제도에 가입하셔도, 사업 보상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

\* 견인 요금 및 기타 차량 운송 비용(당사 지정 공장까지)이 프리 레인지를 초과하는 경우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.

※ 금연 차내 흡연이나 동물과 동승 등의 경우, 청소비는 고객 부담입니다. ¥20.000 (세금 별도)부터

2025년 6월 10일 개정